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574 |
|----------|------|

발의연월일 : 2020. 7. 31.

발 의 자 : 고용진 · 권인숙 · 김영배
남인순 · 노웅래 · 박상혁
박성준 · 박홍근 · 송영길
안규백 · 양이원영 · 윤관석
이탄희 · 이해식 · 전해숙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 등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직매입 거래에 있어 납품 대금의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관련 납품업체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 현행법 제8조는 상품의 판매 대금 지급 기일을 상품 판매 후 월 마감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과 함께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을 특약매입거래, 매장 임대차 거래, 위수탁 거래로 한정하고 있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직매입 거래와 같이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및 대금의 정산

등을 규율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받은 뒤 60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쇼핑 상에서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여, 유통업계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 구제하고, 유사 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4항 개정, 제2항 신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을 각각 제8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 내지 제3항에”로 한다.

-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생략) <신설></p> <p>② 대규모유통업자가 <u>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u>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대규모유통업자는 <u>제1항 및 제2항에</u> 따른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p> | <p>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대규모유통업자는 <u>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u></p> <p>③ 대규모유통업자가 <u>제1항 및 제2항에서</u> 규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대규모유통업자는 <u>제1항 내지 제3항에</u> 따른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p> |